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3. . .<br>(제 회)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추경호<br>(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3.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의 일반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8로,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및 추가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4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상반기(2023.1.1.~6.30.)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0. ~ 1.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을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2까지의”를 “제91조의22까지 및 제92조의2”으로,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를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및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

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2호 중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같은 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을 각각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각각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으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를 “제91조의21, 제91조의22 및 제92조”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 중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2)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략)

<신 설>

-----.  
-----  
-----  
-----  
-----

- 1) (현행과 같음)
- 2) -----  
-----  
-----  
-----  
----- 100분의 15  
(중소기업은 100분의 25)  
-----

나. (현행과 같음)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  
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  
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  
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  
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  
-----





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1명 당 투자금액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라목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4. -----  
-----  
-----  
-----  
-----  
-----  
-----  
-----  
-----  
-----  
-----

5. -----  
-----  
-----  
-----  
-----  
-----  
-----  
-----  
-----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라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  
-----  
-----

나. -----  
-----  
-----  
-----  
-----  
-----  
-----  
-----  
-----  
-----

다. -----  
-----  
-----2023년 1  
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  
-----  
-----  
-----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신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1) -----  
-----  
-----  
-----  
-----  
-----  
-----

2) -----  
-----  
-----  
-----  
-----  
-----  
-----

라. -----  
-----  
---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1,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 제121조의28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2. (생략)

<신설>

<신설>

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

2. (현행과 같음)

3. 제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12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
| 연 락 처         | (044) 215 - 4131 |